

소 방 법

개정 1973. 2. 8 법률제2503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 또는 진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사회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산림·주차·선거·항내에 계류된 선박·건축물 기타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관계자”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4. “주차”라 함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차량을 말한다.
5.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을 말한다.
6. “소방대”라 함은 소방기구를 장비한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7. “소방대원”이라 함은 소방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 군수의 책임과 감독) ① 시장(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책임이 있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및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방치되어 있는 위험물 기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건의 처리와 함부로 존치 또는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물건의 이동 또는 철거.
4. 기타 화재예방상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3호의 경우 관계자의 주소·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등의 이동 또는 철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자의 승락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승락없이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이를 행할 수 없다.

1. 흥행장·백화점·학교·공장·작업장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이하 “특수장소”라 한다),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산림을 검사할 때.
3.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24시간

전에 이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는 신분증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소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지극한 관계자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시장 또는 군수는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신축·증축·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손실보장) 시(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의 신축·개축·이전·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인가 또는 확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그 허가·인가 또는 확인에 있어서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허가·인가 또는 확인을 할 수 없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이 이 법령의 관계 규정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건축법 제 5조제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기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당해 행정청에 동의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① 특수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의 관계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방화관리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제 1호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통보·피난등의 훈련.
4. 소방용설비 기타 소방활동상 필요한 설비의 정비.
5. 화기취급의 감독.
6.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 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공동방화관리) ① 고층건축물(높이 15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것 또는 지하가(지하의 공간물안에 설치된 점로·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것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자는 제 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계획의 작성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① 고층건축물·학교·공동주택·공장·시장·백화점·도서관·지하가 또는 극장·카페라테·호텔·병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카텐·실내장식물·전시용 합판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방염성능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목욕탕·연돌·화로·전기시설 기타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불의 사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할 사항은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압축아세틸렌가스·액화석유가스 등의 저장 또는 취급신고) 압축아세틸렌가스·액화석유가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 또는 소화가 극히 곤란한 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 3 장 위험물의 취급

제14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하 “지정수량”이라 한다)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의 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를 저장하거나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또는 취급소(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10일 이내의 기간내에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동일 저장소(내화구조의 간벽으로 완전히 구분된 벽이 2 이상이 있는 저장소에 있어서는 동일한 실)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조소등과 제 1항 단서의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가 그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도지사(이하 “허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이하 “시설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 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을 설치하였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허가

청의 원공검사를 받아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조소등의 설치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허가의 효력의 승계) 제조소등의 양수인은 제 1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승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허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물 취급주임) ① 제조소 등의 설치자는 제 19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를 위험물취급주임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위험물취급주임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보안·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취급주임의 참여없이 위험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을 선임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관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위험물취급주임면허) ①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종류는 갑종과 을종으로 한다.

② 갑종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종 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보안감독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험물취급주임의 면허시험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면허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위험물 취급주임으로 부적당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취소를 당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1조 (적성검사)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3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면허의 취소등) 위험물취급주임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될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4. 위험물취급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3조 (위험물시설안전원)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의 관계자는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고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소등의 구조·설비에 관하여 보안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그 제조소등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규정을 정하고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청은 제1항의 예방규정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허가청은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 (자위소방조직) ①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서 지정을 받은 사업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위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제조소등의 감독) ① 허가청은 화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소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위치·구조·설비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허가청은 검사의 결과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있어서 당해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수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단속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청은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2.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8조 (위험물의 운반) 위험물의 운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적재방법 또는 운반방법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소량위험물등의 취급) 지정수량미만의 위험물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위험물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 (수수료)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그 위치·구조·설비의 변경허가와 완공검사 또는 위험물 취급주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적용의 제외) 이 장의 규정은 항공기·선박·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운반 및 취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소방시설

제33조 (특수장소등의 소방시설) ① 특수장소의 관계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 기계기구, 소화용수·토사 및 피난설비(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소방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4조 (소방시설의 시공) 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제1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할 수 없다.

제35조 (소방설비사 면허) ① 소방설비사

면허의 종류는 감중과 을중으로 한다.

② 감중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내무부장관이 부여하고, 을중 면허는 당해 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도지사가 부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중소방설비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감중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와 을중 소방설비사면허를 받은 자(이하 “을중소방설비사”라 한다)가 행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소방설비사의 면허시험, 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와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소방설비사의 면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시공신고) 소방설비사는 제1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하기 10일전까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종류, 시공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소방설비사의 책무등) ① 소방설비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방시설의 시설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방설비사가 그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소방설비사면허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38조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의 허가) ① 소방용 기계·기구·설비 및 소화약제 방화도로·방화액 기타 방화약품(이하 “소방용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및 제조소별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39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판매업의 허가)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을 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조된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실수요자에게 적대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상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금지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영업정지등) ①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청은 3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규정된 시설기준 또는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2.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정지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청은 그 자에 대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2조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 ① 소방용 기계·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검정은 내무부장관이 행한다.
- ③ 제2항의 검정의 기준이 될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성분·재료·구조·규격·성능 기타 필요한 사항과 검정합격표시는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표시가 없는 소방용 기계·기구등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설치·변경 또는 수리의 도급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감 독)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사무소·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장부·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소방용 수리시설) ①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소화전·저수조 기타의 수리시설은 관할시 또는 군이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에

있어서는 그 설치자가 설치·유지와 관리를 한다.

제45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지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못·샘물·우물·수조 기타 소방에 공할 수 있는 수리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승락을 얻어 이를 소방용 수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 수리시설을 변경하거나 사용불능의 상태에 두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화재의 경계

제46조 (소방신호) ① 화재예방·소화활동·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신호(이하 “소방신호”라 한다)의 종류·방법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② 누구든지 소방신호 또는 이와 유사한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 (화재위험경보)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상업무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상기상의 경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의 경보를 발하였을 때에는 그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 해당 구역안에 있어서의 불의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경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정한 구역안에 있어서의 모닥불·휴면등 옥외의 화기취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4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 밀집지대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검사와 소방훈련을 행하며, 그 관계자에 대하여 소방용수·토사 기타 소방상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화재속보설비·소화전·소방용 저수시설 소방용마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손괴·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장 소화활동

제51조 (화재의 통지) ① 화재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소방서 또는 경찰서나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통지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 (관계자들의 소화의무) 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소방대가 화재의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소화, 연소의 방지와 인명구조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화재의 현장에 있는 자는 관계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으로 출동할 때에는 제차와 보행자는 이에 통로를 피양 하여야 한다.

-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6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소방자동차가 소방서나 주차장에 돌아오는 도중과 기타의 운행의 경우에는 종을 사용한다.

제54조 (비교통용 도로등의 사용) 소방대는 화재의 현장에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일반교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도로나 공공의 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공지 또는 수면을 통행할 수 있다.

제5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현장에 방화경계구역을 설정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구역으로부터의 퇴거를 명하거나 그 구역안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② 소방대가 제1항의 방화경계 구역에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의 직권을 대행할 수 있다.

제56조 (소방응원)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긴급한 때에는 인접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자는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 (소화중사 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상 부득이 한 때에는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화재의 현장에 있는자로 하여금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강제처분) 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기타 소방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그 화재, 기상 상황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연소의 방지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소방대상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상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2항에 규정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도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받은 자는 관할시 또는 군에 대하여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피난명령)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험이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의 거주자에 대하여 피난을 위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제 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금수유지의 긴급조치)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현장의 급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제 44조 및 제 45조에 규정된 이외의 수리를 사용하거나 용수로의 수문·통문 또는 수도의 계수관을 개폐할 수 있다.

제 7 장 화재의 조사

제61조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그 화재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피해재산"이라 한다)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조사는 소화활동과 동시에 이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62조 (강제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61조제 1항의 조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

여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 5 조제 1항 단서(관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와 동조제 4 항제 5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자에 대한 조사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경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거나 증거물을 압수한 경우에도 제 1항의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검사에의 사건송치 전까지 그 피의자에 대한 질문과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보험회사가 그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65조 (소방관과 경찰관의 상호협력등) ① 화재원인과 피해재산의 조사에 있어서는 소방관과 경찰관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 6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후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의용소방대

제6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와 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중 희망하는 자로서 구성되되 그 설치·명칭·구역·조직·정원·임면·징계·훈연·검열·복제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으로서 소방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된 때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유급상비대원을 둘 수 있다.

제68조 (보 수)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출동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의 수당과 유급상비대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할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은 제 52조제 2 항 또는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연소의 방지나 인명구조작업에 종사한 자가 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도 이를 준용

한다.

제7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의용소방대의 경비는 지방세법 제 23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공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

제71조 (방공업무의 집행등) ①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방공업의 규정에 의한 방공업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용소방대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근로동원을 면제한다.

제 9 장 소방력기준등

제72조 (시·군의 소방력기준) 시와 군의 소방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① 시와 군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② 제 1항의 국고보조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벌 칙

제74조 (벌 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 5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
2.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망루 또는 경중대를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제75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화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화재경보 시설이나 제 44조제 2항 및 제 4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소방대원이나 제 52조 또는 제 57조에 규정된 자의 소화, 연소의 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 58조제 1항·제 2항 또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처분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76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태만히 한 자.
2. 제 25조·제 38조 제 1항 또는 제 42조 제 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77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 14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제 15 조 제 1 항, 제 16 조 제 2 항, 제 18 조 제 3 항, 제 34 조 또는 제 3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취급주임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행한 자.
4. 제 23 조 제 1 항 또는 제 2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 27 조 또는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자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을 행한 자.

제78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상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 4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 26 조 제 2 항 또는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9조 (동 전)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월이상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방해한 자.
2. 제 5 조 제 1 항 및 제 6 항, 제 26 조 제 1 항 또는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0조 (동 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 9 조 제 2 항 각호의 업무를 태만히 한 방화관리자.
2. 제 10 조 제 2 항· 제 13 조 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3.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 4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방용 수리를 변경 또는 사용불능의 상태에 둔 자.
5.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한 화기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6. 제 4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소방훈련 또는 소방설비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 50 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부로 소방용의 화재탐지기·소화전·저수시설·망루 또는 경종대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방해한 자.
8. 제 51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에 허위를 통지한 자.
9. 제 55 조 제 1 항 또는 제 5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0. 정당한 이유없이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의 사용, 용수로의 수문·통문 또는 수도의 제수관의 개폐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81조 (동 전) 제 9 조 제 3 항· 제 15 조 제 2 항· 제 18 조 제 4 항 또는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는 1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82조 (동 전)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제 3 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적용한다.

②(소방사장의 직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 1 항의 대통령령이 시행될 때까지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중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 있어서는 제 4 조·제 5 조·제 8 조·제 9 조 제 3 항·제 10 조·제 13 조·제 14 조·제 18 조 제 4 항·제 30 조·제 33 조·제 36 조·제 45 조·제 47 조·제 48 조·제 49 조 제 2 항·제 55 조 내지 제 59 조·제 64 조 및 제 67 조에 규정된 소방사장의 직무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사장이 행한다.

③(허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저장소·또는 취급소의 설치 허가 및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를 개수하여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구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면허의 효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주임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⑤(구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의 효력)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으로 본다.

国民住宅債券

電力債券

代納 및 賣買

서울 特別市 中區 太平路 2 가 46-5

京一社

(22-3700 (직통))
(23-6000 ("))
(22-6000 (연결))

注文方法

口座NO. 서울農協中部支所 3700
第一銀行德壽支店 6000

月刊 **建築士** 3月號

通卷 第53號 1973年 3月 31日 發行

發行人兼 姜 大 雄

編輯人

登錄番號: 第 21-1251 号

登錄日字: 1967年 3月 23日

登錄變更: 1972年 4月 12日

發行所: 大韓 建築士 協會

서울 特別市 中區 太平路 1 街 60-17
(太星빌딩 5 층)

☎ (73) 9491, 9492, (74) 1045

印刷所: 高星文化印刷株式會社

(非 賣 品)